

# 2024년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28. 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최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3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48건(안건번호 제2024-21485호~2233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1485호~21486호(순번 1번~2번)는 권리자의 법적 다툼이 계속 중인 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수단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권리자에 의한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등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불법복제물등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4-21487호~21491호(순번 3번~7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1492호~21518호(순번 8번~34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1519호~22332호(순번 35번~848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3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제2호 안건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955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권리자의 대리인이 권리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저작물인 'OO' 도안을 무단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류브랜드 'OOOO'의 공식 쇼핑몰 웹사이트 제품 판매 게시물 등을 신고한 사안으로 총 2건임. 신고대상 저작물인 OO 도안은 권리자인 OO OOOO가 1996년경 창작하여 OOO OOO의 시집 'OOOOOOOOO OOOO'의 삽화로 최초 공표하고, 이와 사실상 동일한 도안을 1998. 2.경 다시 'OOOOOOOO' 잡지를 통하여 공표한 등의 사실이 있는 저작물임.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 심의대상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법인 OOOOO는 2017. 9. 8. 위 OO 도안의 권리자 OO OOOO의 성명 'OOOO OOOOOOOOO' 및 그 OO 디자인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법인 OOOOOOOOOOOOOOO 및 OOOO OO와 판매대리점 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OO 도안이 포함된 의류, 신발, 장갑, 가방, 모자, 액세서리 제품을 주식회사 OO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OOOOOOO' 라는 브랜드로 국내에서 판매하였음. OOOOO는 2022. 1. 1. 기존의 'OOOOOOO' 라는 브랜드명을 'OOOO' 으로 변경한 다음, 브랜드 매장과 공식 웹사이트 게시물 등에 위 OO 도안을 사용하고, 같은 도안을 사용한 의류, 신발, 장갑, 가방, 모자, 액세서리 제품을

생산하여 위 매장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원저작자인 OO OOOO는 2022. 3. 3. OOOO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법원은 “위 OO 도안의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인 OO OOOO에게 귀속되고, OOOOO는 위 OO 도안을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도안을 표시한 의류, 신발, 장갑, 가방, 모자, 액세서리 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취지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2번의 사안은 권리자의 법적 다툼이 계속 중인 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수단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권리자에 의한 저작권법 제 103조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등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불법복제물등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A 위원: 일본 업체는 어떤 근거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권리자가 소속된 회사가 2000년경 일본 업체와 함께 음악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권리자가 OO 도안을 앨범커버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 다만,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음악 제작 용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OO 도안에 관한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일본 업체로 옮겨간다는 취지의 명확한 계약 문구가 없었음. 해당 계약에 대해 원심에서 해석한 결과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취지이지 그 권리 자체가 일본 업체로 옮겨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음.
- 김원 분과위원장: B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일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시정 권고 대상에 확실하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

번~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로 총 5건임. (순번 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000 블로그에 '뮤지컬 판매 밀캠 밀녹', '뮤지컬 밀녹 밀캠 자료 교환 판매'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2024. 3. 22. 기준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재된 점을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는 비밀댓글을 통하여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번~7번은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 권고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7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3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OOOO', 'OOOO'과 OOO 카페 'OOOO'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77건이며,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8번~34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3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

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번~8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1,87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마법물약의 비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8번은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마법물약의 비밀' 전체 분량을 37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3. 14. 개봉하였으며, 현재 웨이브 등 OTT에서 11,000원에 제공 중인 애니메이션임.

(영화 '데드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21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데드맨'을 3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7. 개봉하였으며, 현재 웨이브 등 OTT에서 7,000원에 제공 중인 영화임.

(만화 '스즈메의 문단속'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47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스즈메의 문단속' 1화~3화를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1.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이며, 1화~2화는 무료 제공 중이나, 3화부터 1화당 600원에 판매 중인 만화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5번~84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21485호~21486호(순번 1번~2번)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21487호~21491호(순번 3번~7번),  
 안건번호 제2024-21492호~21518호(순번 8번~34번),  
 안건번호 제2024-21519호~22332호(순번 35번~84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위 가결 안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o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4.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